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FAQ

2021. 1.

목 차

I 지원대상 관련

1.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1
2. 소상공인 기준은	2
3.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지	4
4. 타 지원금을 중복 수령 가능한지	6
5. 새희망자금 수혜자 버팀목자금 지급	6
6.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함	6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버팀목자금 신청 가능 여부	7
8.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여부	7
9.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 가능한지	7
10. 여러 사업체 동시 운영하는 경우	7
11.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지원 대상 증가	7

II 자금신청 관련

12.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지	8
13. 온라인 취약계층의 경우	8
14.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8
15.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8
16.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9

17. 신청 시 준비서류 및 문의는 어디에	9
18. 사업자번호 입력했는데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10
19. 본인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능한지	10
20.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지	11

III 지원금액 관련

21. 편의점의 경우 매출액 산정 기준 변경 필요	11
22. 편의점의 경우 점포별로 구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	11
23. 집합금지업종인데 100만원만 지급되는데	12

IV 매출감소 판단 관련

24.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기준은	12
25. '19년 매출은 없고 '20년 매출만 있는 경우	12
26. '20년 11월 이후 개업한 경우	12

I 지원대상 관련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요건>

구 분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매출액 감소	지원금액
집합금지업종	○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예)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음식점 10억원 이하	무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	○		무관	200만원
일반업종	○	'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	○	100만원

* '20.11.30.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함(휴·폐업 제외)

** 매출 감소로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업종 우선지원

< 고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조치 기준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 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 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편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편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 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음식점의 경우 10억원)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24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 ② 일반업종 :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 ('20년 개업) '20. 9~12월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원 이하
-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5인 미만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0인 미만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0억원 이하	5인 미만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 다만, 용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 동일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익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 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 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자금 신청 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 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4. 중앙정부·지자체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앙정부)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의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대상입니다.

(지자체) 지자체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5. 새희망자금 수혜자에게는 매출감소를 확인하지 않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나요?

새희망자금 기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다만,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21.2.25일)을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21.3월중)하여 매출 미감소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자금 환수 원칙

- 매출이 감소하여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이번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6.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인데 문자를 못 받았고 온라인 시스템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인한 것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산재보험대상 적용 14개 직종* 특고인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화물차주·학습지교사·방문교사 등

-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8.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9. 외국인·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등록을 한 외국인, 미성년자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됩니다.

10. 여러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상이한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요?

-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1. 새희망자금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 ①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이 확대되고, ② '20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업한 소상공인도 포함된 결과 버팀목자금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지원 대상이 새희망자금보다 늘어났습니다.
- ① 이·미용시설 추가, 음식점·학원 등에 대한 영업제한조치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 ② '20.6 ~ 11월 개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7만개사가 지원 대상에 추가

II

자금신청 관련

12.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온라인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고령자, 시각장애인, 중증환자 등)은 가족,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청은 대표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 새희망자금 신청시,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장 상인매니저' 도움 받은 사례 다수

14. 1차 신속지급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입니다.
- 신청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15. 버팀목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문의는요?

- 1차 신속지급(1.11~) → 1차 확인지급(2월) → 2차 신속·확인지급(3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시기	공고 시기
1차 신속지급	11.24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1.11~	1.6.
1차 확인지급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공동대표·사회적기업·협동조합·미성년자 등	2월 중	(향후 공고)
2차 신속·확인지급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토대로 선별*	3월 중	(향후 공고)

* (집합금지·영업제한) 1차 지급 미수급자중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 감소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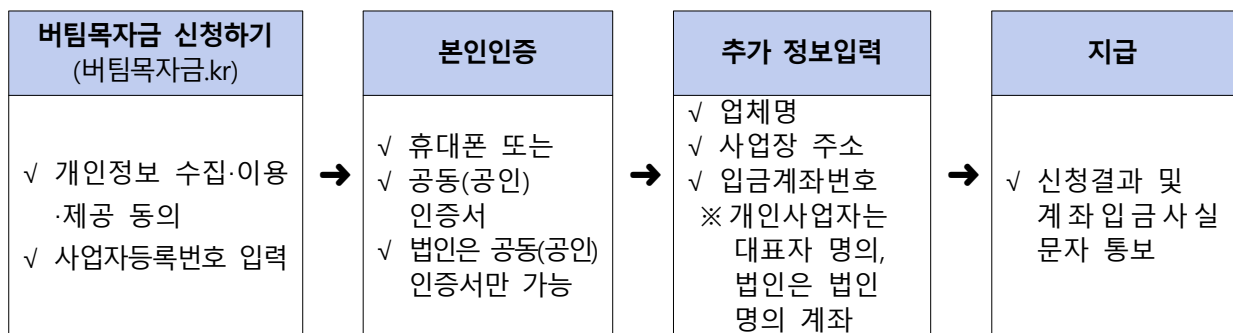
○ 신청시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 [09시-20시 채팅상담] 이용
(전화 문의) ☎ 1522-3500 (버팀목자금 콜센터, 09~18시 운영)

16.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1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 절차 >



- 1차 확인지급, 2차 신속·확인지급은 별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17. 신청 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확인지급 신청자 준비서류 >

구 분		준비서류	비고
일반 업종	공동대표, 가족대리수령(미성년대표 등)	대리인 위임장	자금 신청 문자 사전 발송
	계좌압류 사업장 등	가족관계증명서류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소비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확인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지자체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확인서	

18.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1)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2)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19. 버팀목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 다만,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 등은 가족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2월)이 가능합니다.

20. 1월 중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 1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1차 신속지급)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II

지원금액 관련

21. 마진이 낮은 담배의 매출액 비중이 높은 편의점은 매출액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없나요?

-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수많은 취급 품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신속지원을 위해 행정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에서 마진이 낮은 일부 품목을 조사해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2.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 어떤 곳은 일반 업종으로 지원받는 것은 왜 그런가요?

- 편의점을 모두 동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휴게음식점으로 자치단체에 영업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겉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

* 휴게음식점은 운영에 필요한 위생점검·교육·시설 설치 등 규제 대상임

23.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100,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IV

매출감소 판단 관련 (일반업종만 해당)

24.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간매출액이 '19년 연간매출액 보다 감소한 사업장입니다.
- ('20년 개업) '20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입니다.

구 분		기준 매출액	비교 매출액
'19년 이전 개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20년 연간 매출액 * '21년 매출 신고 시 확인	'19년 연간 매출액
'20년 개업자		'20년 12월 매출액	'20년 9~11월 월평균 매출액

25.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되는지?

-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6. '20.11월에 개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